이용료

1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%를 본인이 부담한다.
2. 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(40% ,60%),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.

[첨부 3]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

비급여항목	산출근거(일 or 월)	금액(1일)	금액(월26일)	비고
식재료비(간식제외)	1500 * 2 =	3,000	78,000	
간식비용	1,000 =	1,000	26,000	
이.미용비	대상자의 요구에 따라	무료/미용실(청구)		
등급외자 이용료	일 10,000원			
월 초과액	전액 본인 부담			
진료비,약제비등 일체의의료관련비용	전액 본인 부담			

[첨부 4] 이용료 및 비용 변경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[첨부 5] 이용료에 대한 규정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: 무료
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「의료급여법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

2.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.

- 서비스 수가표[첨부 1]에 의해(등급자)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15%,경감 대상자는40%, 60%로 한다.
-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% 이용자에게 받는다.
-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.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.
-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,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.